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년 03월 15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윤**	윤** 1958-04-29	경상남도 사천시 팔포3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60-02-20	경상남도 사천시 팔포3길	무단전출
안**	안** 1957-07-25	경상남도 사천시 통창동길	무단전출
박**	박** 1967-02-10	경상남도 사천시 갈대샘길	무단전출
여**	여** 1970-02-28	경상남도 사천시 동금2길	무단전출
송**	송** 1961-12-07	경상남도 사천시 동금4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68-10-28	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	무단전출
채**	채** 1970-03-25	경상남도 사천시 동금4길	무단전출
박**	박** 1970-07-17	경상남도 사천시 신항로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하 정민 문의전화 : 055-831-5327)

2016년 03월 04일

